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0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3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개정이유

- 가.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인력 18명(한시정원, 행정안전부 2010년 도 총액인건비 배정)에 대한 정원 증원
- 나.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 - 정원총수 : 6,221명
 - 집행기관의 정원 : 3,416명
 - 소방안전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2,200명
 -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509명
 - 의회사무처의 정원 : 96명
- 나.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3)
- 다.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(안 별표 4)

3. 정원 증원 등 조정내역

- 가. 도시철도2호선 건설 한시정원 증원 : 18명(6급6명, 7급12명)
- 나. 일반직 직급비율 조정
 - 5급 : 17% → 18%(1% 증)
 - 8·9급 : 8% → 7%(1% 감)

4. 참고사항

가. 비용소요 추계서(8쪽)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(9쪽)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“6,203명”을 “6,22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,398명”을 “3,41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·9급
비 율	6%이내	18%이내	35%이내	34%이내	7%이상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·10급
비 율	8%이내	22%이내	50%이내	20%이상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16%이내	84%이상	10%이내	90%이상

4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 이 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1%이내	3%이내	6%이내	9%이내	16%이내	31%이내	34%이상

5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 상 당 이 상	5급 상 당	6급 상 당	7급 상 당	8급 상 당
비 율	24%이내	18%이내	26%이내	26%이내	6%이상

※ 비 고 :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직급별 기관별	총계	본청 및 소속기관					의회 사무처
		소계	본청	직속기관	경제자유 구역청	사업소	
총 계	6,221	6,125					96
정무직 소계	1	1					
일반직 소계	2,506	2,442					64
1급	1	1			1		
2급	1	1			1		
2급·3급	1						1
3급	19	19	10	2	4	3	
3급·4급	1	1	1				
4급	109	107	58	6	16	27	2
5급 이하	2,374	2,313					61
별정직 소계	46	40					6
1급 상당	1	1	1				
4급 상당	9	3	1	2			6
5급 상당 이하	36	36					
연구직 소계	136	136					
연구관	20	20		16		4	
연구사	116	116					
지도직 소계	23	23					
지도관	2	2		2			
지도사	21	21					
소방공무원 소계	2,200	2,200					
소방정	12	12	4	8			
소방령 이하	2,188	2,188					
교육공무원 소계	509	509					
총장	1	1		1	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나 전임강사	414	414		414			
조교	94	94		94			
기능직 소계	800	774					26

[별표 4]

한 시 정 원(제4조제2항 관련)

구 분	직 종	직 급	정원	존속기한	비 고
총 계	계		67		
	일반직	3급	1		
		4급	4		
		5급이하	61		
기능직		1			
본 청	일반직	5급이하	4	2011.3.31	-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
	일반직	3급	1	2010.8.31	-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
		4급	4		
		5급이하	39		
기능직		1	2010.8.31		
사 업 소	일반직	5급이하	18	2010.12.31	- 도시철도2호선 건설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(이하 “지방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<u>6,203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3,398명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,221명</u> ----- -----</p> <p>1. ----- <u>3,416명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
비용소요 추계서

1. 법규안명 :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2. 정원의 변동 내역 : 순증 18명
3. 비용소요 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분(예산과목)	소요비용	산출근거
총 계	716,437	
인건비	650,129	
○ 기본급	464,803	
- 봉급	430,373	6급(19호봉) 2,252,000원 × 6명 × 12월 = 162,144,000 7급(15호봉) 1,862,700원 × 12명 × 12월 = 268,228,800
- 상여금 · 정근수당	34,430	430,372,800원 × 0.96 / 12 = 34,429,824
○ 수당	14,400	
- 장기근속수당	14,400	
· 15~20년 미만		80,000원 × 6명 × 12월 = 5,760,000
· 10~15년 미만		60,000원 × 12명 × 12월 = 8,640,000
○ 정액급식비	28,080	130,000원 × 18명 × 12월 = 28,080,000
○ 교통보조비	28,080	
· 6~7급		130,000원 × 18명 × 12월 = 28,080,000
○ 명절휴가비	43,037	430,372,800원 × 1.2 / 12월 = 43,037,280
○ 가계지원비	71,729	430,372,800원 × 2.0 / 12월 = 71,728,800
물건비	31,320	
○ 직급보조비	31,320	
· 6급		155,000원 × 6명 × 12월 = 11,160,000
· 7급		140,000원 × 12명 × 12월 = 20,160,000
이전경비	34,988	
○ 성과상여금	34,988	
· 6급		2,171,800원 × 6명 = 13,030,800
· 7급		1,829,800원 × 12명 = 21,957,600

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<p>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2. 본청·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<p>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28조 (한시정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.</p> <p>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 조정할 수 없다.</p> <p>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</p> <p>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 <p>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</p>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